#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부론자연학교 사회적협동조합	<ul><li>② 시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li></ul>	224-82-17059
③ 대표자 성명	문진희	④ 공익법인등 구분	공익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yogasatsang@daum.net	⑥ 사업연도	2020년
⑦ 전화번호	033-731-7425/010-8754-9525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20년 12월 27일
⑨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부론로 207		

## 2. 기부금의 수입 • 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① 수입	① 지출	①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_	_	0	8월	500,000	3,563,440	20,962,630
1월	0	0	0	9월	500,000	13,864,600	7,598,030
2월	13,000,000	1,800,000	11,200,000	10월	500,000	4,328,900	3,769,130
3월	500,000	146,400	11,553,600	11월	500,000	3,145,780	1,123,350
4월	500,000	2,373,200	9,680,400	12월	50,500,000	3,944,430	47,678,920
5월	23,500,000	3,406,470	29,773,930	합계	91,000,000	43,321,080	
6월	500,000	2,753,000	27,520,930	차기이월		_	47,678,900
7월	500,000	3,994,860	24,026,070	시기이걸	_	_	47,070,900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① 지출월	⑤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①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10월	장학금	1	춘해대학교	1,000,000
10월	마을 어르신 복지비 지원	1	박영수	1,000,000
8월	농촌유학 홍보를 위한 여름캠프	5	일성콘도, 대관령목장등	1,000,000
① 연도별	20 지급목적	② 수혜인원	②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② 금액
2020	유지비 - 각종 공과금		각종 공과금	3,515,720
	사무비 - 물품구입비(사무,도서)		물품구입비(사무,도서)	1,492,260
	프로그램 진행 (호흡 트레이너)	100	헤이그라운드 및 줌	2,313,100
	법인인건비	2	손나영, 이미희	20,200,000
	프로그램 진행 (요가삿상)	30	11번가 등	3,600,000
합 계				34,121,080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② 지출월	② 국가명	26 지급목적	② 지급건수	②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② 금액
10월	인도	승복 제작 (천구입)	1	세촐링 모나스트리	9,200,000원
③0 연도별	③ 국가명	② 지급목적	③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③5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 니다.

2021년 4월 28일

제출인: 부론자연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기부금의 수입 • 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⑭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19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②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 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③ 라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